

## 국회의원(윤용근) 징계안

|          |  |
|----------|--|
| 의안<br>번호 |  |
|----------|--|

요구연월일 : 2026. 7. 31.

요 구 자 : 정혜경 · 윤종오 · 전종덕  
손 술 · 박홍배 · 박해철  
김 윤 · 오세희  
임문영 · 김문수 · 조인철  
문금주 · 전진숙 · 허성무  
송재봉 · 김준형 · 강경숙  
김선민 · 이해민 · 정춘생  
서왕진 · 한창민  
의원(22명)

### 주 문

국회의원(윤용근)을 「국회법」 제155조제8호,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 징계사유

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회의원 윤용근은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본회의장에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국회의원이자 청문위원으로서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이 의심이 되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음.

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윤용근은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본회의장에서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개최한 대한축구협회 운영 관련 청문 대상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자 HDC 회장에게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정몽규 전 회장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답신하는 등 청문 진행 중 증인과 사적으로 교신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음.

라. 국회의 청문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청문위원은 증인에 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심문에 임하여야 하며, 청문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청문 제도의 근간임.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할 국회 청문회임에도, 피감기관 핵심 증인에게 사적인 친분을 이유로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국회의원 전체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킨 것으로, 「국회법」 제25조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가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임.

마. 나아가 문자 내용 중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라는 대목은 제3자를 통한 사전 접촉과 사적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청문

대상자와 청문위원 사이에 있어서는 아니 될 부적절한 교감 내지 유착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는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임.

마.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청문 등을 통해 피감기관과 증인을 감시·견제하는 지위에 있는바, 이러한 권한을 가진 청문위원이 청문 도중 증인에게 배려를 약속하고 사과 의 뜻을 전한 것은 청문위원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바. 위와 같이 국회의원 윤용근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윤리강령준수), 제2조(품위유지), 제3조(공정수행 및 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현저히 위반하였는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